

대구경북지역
정신보건시설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워크숍

2007. 12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순 서

- 15:00 ~ 16:00 정신장애인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방향
- 16:00 ~ 16:10 질의응답
- 16:10 ~ 16:20 휴식시간
- 16:20 ~ 16:50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실태조사 결과보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시설 관련규정 설명
- 16:50 ~ 17:00 질의응답

차 례

I. 정신장애인 인권	5
1. 인권이란 무엇인가?	5
2.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8
3. 정신장애인 인권의 국제적 기준	10
4.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18
II.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실태조사 결과보고	32
1. 조사개요	32
2. 점검항목별 실태현황	33
3. 점검결과 문제점	33
4. 진정함 부적합 설치 사례	34
5. 진정함 설치 모범 사례	35
6. 시설종사자 의견	36
5.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	36
III. 정신보건시설 관련규정	38
○ 정신보건시설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41
○ 정신보건시설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43
○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46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견본 사진	50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51
○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	53

○ 정신보건법 주요 조항	54
○ 격리 및 강박 지침	57

IV.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시설관련 최근 보도자료 61

○ 강제입원, 퇴원불허, 격리·강박, 폭행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	63
○ 정신병원 강제입원·강금·부당처우 등 정신병원 인권침해 검찰 고발	69
○ 정신병원, 치료와 인권은 뒷전	76

정신장애인 인권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국가인권위원회소개
3. 정신장애인 인권의 국제적기준
4.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5. 마치는말

정신장애인 인권

1.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의 개념과 정의

- 사람이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
-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天賦的)이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不可讓的), 인간이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권리 (보편적인 권리)
 -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양도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
 - 개인 혹은 집단이 완전한 인간성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인 것
-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권을 의미하는데 비하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기본권과 인권은 대부분 일치하나, 인권은 보편성과 천부적인 특성을 갖는다는 특성을 가짐
 - “인간의 권리를 넘어 인간이 되기 위한 권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 사람이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
- 인권에 관한 3가지 접근방법¹⁾
 - 인권을 자연권으로 봄 (천부인권, 세계인권선언) : 인권을 인간본성을 실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봄
 - 인권을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봄 (소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

1) Jim Ife, 2006, 인권과 사회복지서비스: 기회와 도전(국가인권위주관 사회복지분야 인권관점확산을 위한 워크숍 발제문) 참조

: 입법과 정부정책에 의해 결정

- 인권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며 형성되는 것으로 봄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권리)

2) 선언 및 법규에 나타난 인권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세계인권선언(제1조)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하여야 한다.
- 미국독립선언서 :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신(God)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는 삶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것이다.

3) 인권의 분류와 내용

가. 국제인권장전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DHR, 유엔 1948년 채택)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 '사회권 규약', 1966년 채택)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 '자유권 규약', 1966년 채택)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선택의정서(개인통보제도)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사형제폐지, 1989 채택)

나. 국제인권장전에 따른 인권의 분류와 내용

인권의 분류	개별 인권의 내용
시민적 권리	1. 자결권(제1조), 차별금지(제2조), 남녀평등(제3조), 생명권(제6조, 사형제폐지), 고문금지(제7조), 노예상태금지, 제도, 강제노역금지(제8조), 신체의자유와 안전(제9조), 거주이전의 자유(12조), 평등한 재판받을 권리(14조),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자유권 1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자유권 26조), 처벌제도의 기본적 원칙 (10조) 2.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재판 앞에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 (자유권 14조), 계약상 의무의 불능만을 이유로 구금금지 (자유권 11조), 소수자 권리보호(27조) 3. 의사표현의 자유(19조), 개인적 영역(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보호 (자유권 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자유권 18조), 전쟁과 차별에 대한 선전 금지 (자유권 20조)
정치적 권리	1.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1조) 2. 결사의 자유 (22조) 3. 정치에 참여할 권리 (25조)
경제적 권리	1. 적절한 생활수준을 획득하고 유지할 권리 - 배고픔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1조 2 항), 적절한 식량 의복 주거를 포함하는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사회권 11조 1항) 2. 노동권 (사회권 6조) 3.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사회권 7조) 4.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사회권 8조)
사회적 권리	1.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권 9조) 2. 가족, 임신부, 아동의 권리 (사회권 10조) - 가족에 대한 보호, 혼인의 자유 (자유권 23조), 아동의 권리(자유권 24조) 3.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사회권 12조)
문화적 권리	1. 교육권 (사회권 13조) / 기초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사회권 14조) 2. 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자유로운 과학적 진보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15조) 3. 소수자의 권리 (자유권 27조)

※ 여성차별협약, 아동권리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다. 인권의 변화(인권의3세대)

구 분	분 류	내 용	특 성	강조되던 시대
1세대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자유권)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참정권 등	자유, 보호차원강조 소극적 (negative) 권리,	18세기
2세대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권)	노동권, 사회보장, 교육, 의식주 등	평등, 사회적 지원포함 적극적 (positive) 권리	19세기
3세대 권리	연대의 권리, 공동체로서 전체지역사회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박애, 사회와 국가의 권리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20세기~

※ 모든 인권은 다 중요함 (인권영역의 권리간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 없음)

4) 인권은 국가적 의무이자 국가존립의 근거가 됨

- 오늘날 인권은 국가이미지를 결정하는 대표적 척도
 - 현대 국가는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그 합리성과 정당성을 획득 하고 기본적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선언하고 있음
 - 1993년 비엔나 선언문 제5조 : “정치·경제 및 문화적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 우리 헌법 제10조에서도 국가의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천명
-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존경받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선진국’ 뿐만 아니라 ‘인권의 선진화’도 매우 중요
 -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더욱 공고히 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하여야함.
-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존중을 일반화하여 함께 사는 세상실현

2. 국가인권위원회 소개

- 1) **설립목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등)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

2) 주요기능

- 인권관련 법령·제도·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 권고·의견표명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
-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 및 국내외 인권관련 단체·기구와의 협력
-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연구·권고 및 의견 표명

3) 위원회 조사대상 및 구제방법

-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규정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조사 및 구제
 - 다수인 보호시설은 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 ⇒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 ⇒ 그 외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등
- 진정서, 직권조사(법제30조제3항), 방문조사(법제24조), 면전진정 등을 통해서 조사 및 구제업무 수행
 -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조정
 - 구제조치 등의 권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고발 및 징계권고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고발, 인권침해에 책임자 징계권고)
 - 긴급구제조치(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수용자 진정권 보장(법 제31조)

-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함.

○ 진정방법의 고지 등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한 때에는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하고, 진정관련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하고, 진정함을 확인 진정서가 진정함에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 (시행령 제7조)

3. 정신장애인 인권의 국제적 기준²⁾

1)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보건 관리향상을 위한 UN의원칙’ (1991) 요약

- 인간으로서 고유의 존엄성을 토대로 한 인류애와 존경을 바탕으로 치료받아야 한다.
- 정신질환(장애)을 근거로 한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 차별은 기본권의 동등한 향유를 저해하는 모든 분류, 배제, 혹은 선호를 의미
- 모든 정신장애인은 「세계인권선언」,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물론이고, 기타 「장애인의 권리선언」이나 「억류나 구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문」 등 관련 협정에서 인정하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 모든 정신장애인들은 가능한 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 정신장애 판정은 절대로 정치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

2) 자세한 내용은 Principles for the person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care (UN Resolution 46/119, 1991.12.17) 참조

인종 또는 종교적 소속, 정신건강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가족이나 직업적 갈등 또는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혹은 정치적 가치나 종교적 믿음과의 불일치 등은 절대로 정신장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모든 정신장애인들은 가능한 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치료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정신보건시설에서 치료가 이루어질 때 환자는 가능한 한 항시 자신의 거주지 혹은 친척 또는 친구의 거주지 근방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지역사회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
- 모든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의료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처방된 계획에 근거해야 하며, 환자와 함께 논의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에는 수정을 거쳐 제공되어야 한다. 환자의 치료는 반드시 개인적 자율성을 지켜주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약물치료는 반드시 법적 허가를 받은 정신보건전문가에 의해 처방되어야 하며, 환자 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 환자의 고지된 동의 없이는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대리인 동의, 위급하게 필요한 경우 예외)
- 환자의 신체적 강박이나 비자발적 격리는 환자나 다른 사람들의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인 경우에 한해, 반드시 해당 정신보건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절차에 따라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신체적 강박이나 비자발적 격리 사건은 그 이유와 성격, 범위를 환자의 의료 기록에 기록해야만 한다. 강박 및 격리된 환자는 인도적인 환경에 처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면밀한 감독을 하고 보살펴야 한다. 관련된 개인 대리인이 있는 경우 환자의 신체적 강박이나 비자발적 격리를 반드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
-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는 환자에게는 입원 즉시 가능한 한 빨리, 본

UN 원칙과 국내법에 따른 **자신의 모든 권리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그 정보에는 이들 권리에 대한 설명과 권리 행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신보건시설 내의 환자들은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다.

(a) 언제나 법 앞에서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인정, (b) 사생활

(c) 의사소통 및 통신의 자유. 이에 는 시설 내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의 자유, 검열 없이 사적인 서신을 주고받을 자유, 사적으로 대리인이나 개인 대리인의 방문을 받을 자유, 합당한 시간이라면 언제나 기타 면회인을 만날 자유, 우편 및 전화 서비스와 신문, 라디오, TV를 이용할 자유, (d) 종교 및 사상의 자유

- 정신보건시설 환자의 **노동이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시설 환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정상인이 국내법이나 관습에 따라 같은 일에 대해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환자가 한 일에 대해 정신보건시설에 보수가 지불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중 합당한 몫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정신보건시설 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비자발적 입원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어떤 사람을 정신보건시설에 **비자발적 환자로 입원**시키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사람을 비자발적 환자로 계속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a) 정신장애로 인하여 환자나 타인에게 직접적이고 절박한 위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나,

(b) 정신장애가 심각하고 판단력이 손상된 사람의 경우, 해당 환자를 입원 및 계속 입원시키지 못한다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이 원칙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입원으로만 가능한 적정 치료나 최소제한적인 대안 치료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 판단할 경우. 첫 번째 정신보건전문가와 관계가 없는 다른 정신보건전문가의 의견을 가능한 한 참조해야 한다. 이 때 두 번째 정신보건전문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비자발적 입원이나 계속

입원을 시켜서는 안 된다.

- 정부는 본 UN 원칙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조사, 불만사항의 접수 및 조사와 해결**, 전문인의 위법행위나 환자권리침해에 대한 징계 및 사법 절차 제도를 위한 적절한 절차와 기구를 마련해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 정부는 적절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교육적, 기타 조치들을 통해 본 UN 원칙을 실행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정부는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본 UN 원칙을 널리 알려야 한다.
- 본 UN 원칙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2) 미국에서 정신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노력

- 조지 부시의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가 2002.4.29일 구성되어(President's New Freedom Commission on Mental Health), 2003. 7월 미국정신보건 의료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Achieving the Promise : Transforming Mental Health Care in America)
-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 두 가지 원칙에 중점을 둬3).

 - 서비스 및 치료는 이용자와 가족 중심으로, 관료주의적인 절차상의 필요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치료법과 제공자에 대한 진정한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증상을 관리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삶의 어려움에 잘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회복을 촉진하며 스스로 회복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의료가 되어야 한다.

- 위원회는 미국 정신보건의료를 변화시키기 위한 초석으로 다음

3) Achieving the Promise : Transforming Mental Health Care in America 2003, pp.5참조

목표를 제시하였다.⁴⁾

- ① 국민들은 정신 건강이 전체 건강에 있어 필수요소라는 것을 이해
 - 정신 보건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stigma)을 줄이는 국가적인 캠페인 필요
- ② 정신 보건 의료는 이용자와 그 가족이 중심.
 - 이용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강화되고 시설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가능한 한 사회에 가장 융합되어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격리와 강박 문제에서도 이용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임. 격리와 강박은 치료수단이 아니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사용될 것이다.
 - 정신 보건 시스템을 회복 지향적으로 바꾸는 데 이용자와 가족들이 충분히 참여
- ③ 정신 보건 서비스들 간의 불균형 시정
 - 변화된 정신 보건 시스템에서 모든 국민들은 인종이나 성별, 민족, 지리적 위치에 상관없이 최선의 서비스와 성과를 똑같이 균등하게 공유하도록 함
- ④ 정신 보건 조기 검진, 진단, 서비스 추천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게 함
 - 연령대를 막론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대해 조기 검진과 진단, 치료 및 지원 협력으로 정신 보건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돕게 될 것이다.
 - 아동들의 정신 보건을 향상
- ⑤ 훌륭한 정신 보건 의료 행해지고 연구를 가속화
 - 연구를 가속화시켜 환자들의 회복과 회복력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을 완치시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정신 보건 의료 및 정보 이용에 선진기술 활용
 - IT 기술을 이용 농촌, 서비스 부족지역 의료 서비스의 접근 용이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원격진료 시스템(telehealth system)

4) ibid. 7~86참조

활용 혜택 제공

○ 국제기준에 따른 정신장애인 인권가이드라인 영역별 분류⁵⁾

인권 영역	하위영역	영역별 인권보장 내용	출 처
1. 평등권	1-1. 차별금지	- 연령, 성, 장애정도, 장애유형, 종교, 출신지역, 가족배경 등 어떠한 이유로도 장애인 차별 금지 - 개인적 차원의 보호에 있어 존엄성과 한사람의 개인으로 존중받을 권리 - 장애아동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	세계인권선언1조 UN MI 원칙1 -2,4 CD 3조A항,4조A항 HD 2조 장권선 2, 3조
2. 생존권	2-1. 의식주 생활	- 개인적인 옷들을 구입, 소유 또는 선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권리 - 신발의 구입, 소유 또는 선택하고 보관할 수 있는 권리 - 영양학적인 적절한 식사의 보장 (식단표) - 식사 및 간식의 선택과 결정 - 식사보조 및 쾌적한 식당환경 - 숙소의 크기와 인원의 적절한 규모 - 숙소의 적절한 냉난방과 개별 침구정리 - 숙소를 꾸미고 가구를 배치할 권리, 필요한 가구 요구할 권리	장권선 제2조 ICCPR 아티클 7
	2-2. 의료 및 건강	- 의료인 및 의료장비의 구비 - 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명 - 화장실 등 공중위생 관리 - 필요한 보장구 및 사용의 자유 - 의료적 욕구의 표현과 자신의 의료적 상태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	장권선 2,6,13조 HD 4조
	2-3. 안전의 권리	화재에 대한 대비장치	세계인권선언 3조
	2-4. 신체 및 정신적 안전의 권리	- 신체적 강요, 신체적 체벌 및 구타로부터의 자유 - 비하적 언어사용 및 정신적 괴롭힘으로부터의 자유 - 성적 희롱 및 성추행, 성폭행, 성적봉사로부터의 자유 - 성생활 보장	장권선 10조 UN MI원칙1의 3조 UN MI원칙8
3. 치료 및 보호과정에서의 권리	3-1. 입·퇴소(원)의 자유	- 입·퇴소시 자신의 의지 반영 - 타 시설로 의뢰될 경우 그 이유 및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 퇴소후 지역사회에서 치료 및 보호받을 권리 - 입소시 환자의 권리고지 받을 권한	UN MI 원칙13 1조, 2조, 3조 UN MI 원칙16 1조, 2조 UN MI 원칙3 11,12조, 16조 코네티컷권리선언 부록 6,7 UN MI 원칙12

5) 국가인권위원회, 2006,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업무 수행 실태조사 pp. 246 ~249 참조

인권 영역	하위영역	영역별 인권보장 내용	출 처
3. 치료 및 보호과정 에서의 권리	3-2. 치료과정에서의 권리	· 명확한 동의에 입각한 치료행위 · 지역사회 등 자유로운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 ·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받을 권리 ·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윤리기준에 입각한 치료행위	UN MI 원칙11 1조 UN MI 원칙3 UN MI 원칙7 HD II 4조,5조 UN MI 원칙1 2조 1항 UN MI 원칙1 5조 1항 UN MI 원칙9 1조 UN MI 원칙9 3조 UN MI 원칙10
	3-3. 시설운영 참여	· 시설서비스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보복을 우려하지 않고 이를 표현할 권리 · 시설생활 및 시설의 운영에 있어 생활인의 의견 반영	UN MI 원칙 21
4. 자유권	4-1. 자기결정권	· 원하는 호칭으로 불려질 권리 · 이미용, 목욕 등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선택 ·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2조
	4-2. 종교의 자유	· 특정종교의 강요 금지 · 주일에 대한 존중과 종교의식 존중 · 종교를 바꿀 수 있는 권리 보장 · 종교생활의 자유(획일적 종교의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18조 UN MI 원칙1 5조 1항 UN MI 원칙13 1조 6항
	4-3. 사생활 보호권	· 목욕 보조시 프라이버시 보호(성별 고려 등) · 개인물품 보관함 제공 · 개인의 방을 잠글 수 있는 권리 · 우편물, 전화 등에 대한 개인 정보보호 · 개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시키거나 정보제공하지 않음 · 개인의 신분증 본인이 관리	세계인권선언 12조 UN MI 원칙13 1조 3항
	4-4. 외부와의 소통	· 방에 초대하여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권리 · 지역사회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 보장 · 외출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12조
	4-5. 표현 및 정보의 자유	· 전화 및 통신기구의 사용 보장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근성 제공 · 수화, 점자 등 모든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 장애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	UN MI 원칙13 1조 5항, 7항
	4-6. 가족권	· 가족과의 자유로운 면회 및 교류의 권리 · 임신, 출산, 양육시 보호제도를 받을 권리 · 결혼 및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권리 ·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로 부모로부터 분리 금지 · 장애아동 은폐, 유기 방지 위해 종합적 정보, 서비스 제공	세계인권선언 16조 장권선 9조 장권선 12조 UN MI 원칙1 5조 1항
5. 사회권	5-1. 사회보장권	· 국가의 생계급여 등 수당의 지급액에 대한 정보와 관리 ·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 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권리	장권선 2, 7조 UN MI 원칙1 1조 5항 UN MI 원칙3 8조, 9조

인권 영역	하위영역	영역별 인권보장 내용	출 처
5. 사회권	5-2. 교육권	· 연령 및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 교육기관을 이용할 권리 · 낮은 연령대 모든 아동 포함, 모든 교육제도 내에서 장애인 권리 존중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장권선 6조 UN MI 원칙1 5조 1항 UN MI 원칙13 2조 3항
5. 사회권	5-3. 노동권	· 시설내 노동의 권리 보장 및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 직업의 선택의 자유 ·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소개 서비스 제공받을 권리 · 시설이나 병원 밖에서 일할 권리	장권선 6,7조 UN MI 원칙1 4조 UN MI 원칙1 5조 1항 UN MI 원칙13 2조 5항, 3조, 4조 UN MI 원칙3 3조
	5-4. 경제권	· 개인재산 소유 및 관리의 자유 · 노동에 따른 적정보수 지급 및 관리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17조 장권선 10,11조 UN MI 원칙1 4조
6. 정치권 (권리 협약 29조)	6-1. 정치적 표현의 자유 권리협약 29조 b)	·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 · 피선거권자(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세계인권선언21조 장권선 4조 UN MI 원칙1 5조 1항
	6-2. 투표권 및 장권선 3조, 권리협약 29조 a)	· 투표에의 참여 보장, 투표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비밀투표의 원칙 보장	세계인권선언26조 1,3 장권선 4조 UN MI 5조 1항
7. 문화권	7-2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	· 자유로운 문화 여가생활의 보장 및 프로그램의 제공 · 시설 내 문화매체의 구비 및 자유로운 이용 · 스포츠, 레크레이션 활동 장소 및 참여 보장	장권선 9조 UN M 원칙13 2조 2
8. 법질차적 권리	8-1. 법률상의 도움	· 인격과 재산보호에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 정신장애인 관련소송에서 정신장애인의 최대이익 고려	장권선 11조 UN MI 원칙1 6조

* 참고

1. UN MI 원칙 - 1991년 UN 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문 46/119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2. WHO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지침(Guidelin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 정신보건 및 약물남용방지분과(Division of Mental and Prevention of Substance Abuse), WHO.
3. 장권선 - 장애인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년 12월 9일, UN총회 결의문 3447에 의해 선언)
4. CD - 카라카스 선언(Declaration of Caracas)
 - * 전미 보건조직/ WHO 미국지사의 후원으로 1990년 11월 14일, 정신과 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카라카스에서 개최된 라틴 아메리카 지역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됨.
5. HD - 하와이 선언 II (Declaration of Hawaii/II)
 - * 1992년 세계 정신과 협회 총회에서 승인됨
6. 코네티컷 권리선언- Your Rights as a Client or Patient, of the Connecticut Department of Mental Health & Addiction Services Annex 6. 7.
 - * 미국 메인주의 모든 정신보건 환자들에게 주어진 환자의 권리선언임.
7. ICCPR -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4. 정신장애인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1) 일반현황 및 인권실태

가. 정신보건시설 등의 입원(소)자수⁶⁾

(단위 : 개소, 명, '05.12.31)

구 분		시설수	인원	주 요 기 능
계		1,332	69,253	- 2006.6.30현재: 79,131 병상 -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484,906명
정 신 의 료 기관	국·공립	18	6,483	정신질환자 진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민 간	1,106	41,774	정신질환자 진료
정신요양시설		57	12,548	만성 정신질환자 요양·보호
사회복귀시설		151	842	치료·요양하여 증상이 호전된 정신질환자 일상 생활·작업훈련, 주거 (1,075병상)
부랑인시설등			4,851	부랑인시설 3,755명, 노숙인쉼터 449명, 미신고 647명

○ 입원환자수 1980년 1만2천명에서 '05년 68,991명, '06년 69,253명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구대비 정신병상수가 지나치게 많은 편에 속함.

- 한국 1,000명당 병상수 약: 1.61(약 73,000병상), 영국: 0.69, 이태라: 0.1, 독일 0.7 등

나. 강제입원 (비자발적 입원) 형태 압도적 (90.8%)⁷⁾

○ 자의입원 : 8.4%/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76.8%/ 지자체입원 등 : 15.6% (2004년)/ 대부분의 EU 선진국은 강제입원비율이 12~15%미만임 ⁸⁾

6) 2006 중앙정신보건사업단보고서

7) 출처 : 2006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고서

8) EU각국의 비자발적 입원과 치료실태조사내용(Salize & Dressing, 2004) 참조 (강제입원비율: 프랑스 12.5%, 독일 17.7, 이탈리아12.1%, 네덜란드 13.2%, 영국13.5% 등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정신보건업무수행실태 용역보고서 370~371쪽 참조)

<입원형태별 분류>

(단위: %)

입원 형태								일본	
	00	01	02	03	04	05	06	99	02
자의입원	8.4	6.7	8.1	7.9	8.4	8.9	9.2	68.6	64.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가족)	73.1	74.1	75.9	74.8	76.8		70.4	28.2	34.1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군·구 또는 시·도지사)	16.4	15.7	14.0	15.6	13.3		19.6	1.6	0.8
기타	1.8*	1.8*	1.9*	1.7*	1.5*	0.9	0.8	1.8	0.8

* : 국립감호정신병원에 입원한 감호치료 대상자 등 (2006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고서)

※ '06중앙정신보건사업단보고서 98쪽의 경우 자의입원비율이 10.7%라는 보고도 있음

다. 입원일수 장기

○ 평균 267일, 정신의료기관 평균 159일(국립 101일, 사립 266일), 정신요양 시설, 2,485일

-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56.2%(2005년)

- 평균입원일 : 독일 약 25일, 영국 52일, 프랑스 35.7일, 이탈리아 13.4일

<평균입원일수: 2006 중앙정신보건사업단보고서>

(단위: 명, %)

구 분	환자수	중앙값	1개월	1~3월	3~6월	6월~1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2006총계	65,498	257일	8,839 (13.5)	11,485 (17.5)	8,868 (13.5)	8,404 (12.8)	11,347 (17.3)	5,402 (8.2)	5,869 (9.0)	5,284 (8.1)
정신의료기관	52,382	160일	8,631 (16.5)	11,077 (21.1)	8,379 (16.0)	7,581 (14.5)	9,230 (17.6)	3,637 (6.9)	3,245 (6.2)	602 (1.1)
(사립병원)	20,954	271일	2,363 (11.3)	3,454 (16.5)	2,917 (13.9)	3,438 (16.4)	4,536 (21.6)	1,896 (9.0)	2,105 (10.0)	245 (1.2)
(국립정신병원)	2,788	102일	502 (18.0)	794 (28.5)	730 (26.2)	244 (8.8)	300 (10.8)	120 (4.3)	95 (3.4)	3 (0.1)
정신요양시설	12,548	2,630일	155 (1.3)	294 (2.4)	366 (3.0)	673 (5.5)	1,785 (14.5)	1,710 (13.9)	2,609 (21.3)	4,682 (38.0)
사회복지시설	842	338일	53 (6.3)	114 (13.5)	123 (14.6)	150 (17.8)	332 (39.4)	55 (6.5)	15 (1.8)	

○ 계속입원심사 퇴원율⁹⁾ 저조

- 2004년 계속입원심사 약 76,000건 중에서 74,000건이 계속입원 되어 2.2%만 퇴원함
- 2005년도 계속입원심사 79,181건중 2,113건 퇴원명령, 2.7% 퇴원

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각

- 정신질환자는 격리·수용시켜야 안전하다는 사회적 편견 만연
- 가족 지지망의 해체 / 시설 퇴원 곤란, 퇴원 후 사회복귀 프로그램 부족
- 직업, 보험, 기타 각종 사회적 서비스 이용의 차별¹⁰⁾
-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 필요
 -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노력과 장애인 스스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도록 노력

마.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수준이 국제기준 등에 미흡

-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경제사회적권리, 1991년 UN이 발표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미흡
 - 부당하게 강제입원(입소)당하여도 보호의무자나 의사가 반대하는 경우 평생 동안 병원, 시설 등 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정신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 및 구제절차가 법·제도적 차원에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다 명확하게 보장하고, 치료과정에서 환자들에 대한 폭언·폭행이나 과도한 격리·강박, 기타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
 - 현행정신보건법을 국제적 수준의 정신보건복지법으로 대폭 손질 시급

9) 중앙정신보건사업단보고서, 2004,2005 참조

10) 민간보험 가입이 제한(상법732조등), 국립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람 및 출입금지, 의료인, 의료기사, 운전면허, 약사, 한의사, 수의사 등 자격증 분야

바. 사회복귀시설 및 지역사회보건 서비스 미흡

- 정신보건시설에서 퇴원하여도 갈 곳이 없거나, 갈 곳이 없어 퇴원을 못하는 실정임
 - 천신만고 끝에 퇴원(퇴소)하여도 오랜 시설생활로 가족지지망의 해체 등으로 갈 곳이 없어 다시 병원과 요양원으로 가든지 노숙인 등으로 전락하는 실정
- 대부분의 병원, 시설에서 이들에게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어서, 우리 사회가 이들을 사실상 시설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2) 진정사건 접수현황 (2007.11.30현재) 및 인권 보호실태 (요약)

가. 진정접수현황(1,105건)

- 2001~2005 : 361건 / 2006 : 254건 / 2007 : 490건

나. 진정내용 분석(2006. 6.¹¹⁾)

구분	진정내용수	백분율
입원문제	269	24.50
퇴원	173	15.40
치료문제	178	15.80
가혹행위	199	17.70
사생활침해	131	11.60
시설생활 문제	103	9.10
환자권리침해	46	4.10
기타	27	2.4
	1,126	100.00

11) 진정내용: 하나의 사례번호 안에도 여러 진정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음(2006. 6월말 통계임)

다. 진정내용으로 본 인권상황

(1) 입·퇴원 및 계속입원 심사 과정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강제 입원
 - 입원 동의서 등에 정신과 전문의 소견 없이 입원 조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검찰 고발
- 자의입원 형식으로 입원시켜 계속입원 심사 절차 누락
 - 장기입원 환자나 가족의 지지망이 해체된 환자에 대하여 자의 입원으로 형식을 임의 변경하면서 환자 동의도 받지 않고 계속입원 심사 기회조차 박탈한 사례
-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입원 및 입원 연장 동의
 - 직계혈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 다수(형제와 자매 등 방계혈족 뿐 아니라 고모, 매형, 처남, 올케, 시동생, 사촌, 조카, 사위 등 친인척)
- 신원불상자의 입원 시 신원조회 절차 누락
 - 입원 당시 신원조회 절차를 누락하거나 입원 조치 이후 신원 확인이 되어도 행려자로 처리하여 계속 입원시킨 사례
- 퇴원명령 불이행(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계속입원 심사 누락(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제55조, 제56조
 -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퇴원명령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요청 등을 이유로 계속입원 조치하고 퇴원명령 사실을 환자에게 통지하지도 않거나 자의입원 형식으로 변경하여 계속 입원
 - 보호자 연락 두절 되자 계속입원 심사 누락 사례
 - 퇴원 후 또는 입원 중 같은 재단 내 타 병원 또는 인접 지역의 협력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례(소위 회전문 현상)

- 입원 및 입원연장 결정 시 입원 또는 입원연장의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대한 사항 서면통지 미실시(과태료 100만원), 법제24조5항(통지), 법제59조
 - 상당수 의료기관이 이 조항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음

(2) 과도한 격리, 강박에 따른 신체의 자유 등 인권 침해

- 강박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부재
 - 의사의 지시 없이 실시되는 임의적 격리·강박/지나치게 장시간 또는 빈번한 격리·강박 조치
 - 치료적 목적외 환자 규율·통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격리·강박

(3) 폐쇄적 병동 운영에 따른 획일적 환자 권리 제한

-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 결여/ 효과적 권리 보장 체계 부재
 - 행동제한 시 진료기록부에 사유 등 요건을 기록하지 않고 그룹별로 임의 분류하여 단계적 제한행위금지 (보건복지부, 2007 정신보건사업 안내)
 - 편지, 전화사용 등 통신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 제한과 임의적 검열
 - 위생, 식사의 질, 운동과 오락 문제, 목욕과 용변 모습 노출, CCTV 설치 등 환자의 인간적 품위 유지와 건강권, 사생활 보장 등에 대한 침해
 - 특정 종교 신앙 및 행사 참석 강요 등 종교의 자유 침해
 - 초과 과밀 수용에 따른 환자 사생활 보호 조치 미흡
 -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시 환자의 안전 확보 곤란 (철문 등)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와 진정절차 고지 의무 위반 (시행령 제7조)

(4) 작업치료 명목의 강제노역 등

- 환자들 일부 또는 다수를 봉사원 등으로 지칭하여 식당, 매점, 세탁실, 정원 관리, 병동 청소 등의 노동에 장시간 동원하면서 작업치료비 명목으로 최저임금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소액의 액수만 지급하고 있는 병원과 시설 상당수
- 치료적 작업 요법 프로그램 및 전담인력의 부재 혹은 형식적 운영

(5) 시설·인력 기준 미달 운영

- 허가병상 초과 입원, 1실 정원 초과
- 정신과전문의 등 의료 인력 기준 미달
- 식당, 화장실, 샤워시설, 상담·면회실, 운동시설, 응급 치료시스템 미비 등

(6) 치료받을 권리와 사회복귀에 대한 인식 결여 및 효과적 지원 체계 부족

- 자의입원 환자와 비자발적 입원 환자, 알콜중독환자와 일반 정신질환자, 환자의 증세정도 등에 대해 적절히 구별된 처우와 프로그램 부재
 - 다양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획일적 치료, 처우
 - 의사와 환자의 면담 등 실질적 치료 시간 부족
- 사회복귀 프로그램 부재 및 가족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조 유도 노력 부족

3) 정신보건시설에의 강제입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가.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의 종류

(1)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

-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정신과전문의 진단만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
 -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그 '질환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인지 그리고 환자 자신의 건강 혹은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로 결정.
-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계속입원치료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보호 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의 진단만으로 매6월씩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해도 정신과전문의가 단순히 '위험성을 고지' 하기만 하면 퇴원이 중지될 수 있음.
- 보호의무자 :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보호의무순위 : 부양의무자, 후견인 순위,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민법 제976조에 따라 당사자간의 협정이 없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결정
 -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소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2) 정신보건법 제25조 (시·도지사에게 의한 입원)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제 25조에 의한 입원은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것임.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 입원하게 할 수 있고,
-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의뢰할 수 있음**(진단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고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당해인이 자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진단을 위한 입원조치를 의뢰하고 보호의무자 등에게 입원사실,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함)
-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기간은 3개월로 하고, 3개월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도 2인 이상의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을 기간으로 계속 입원시킬 수 있음.** (동법 제36조)
 - ※ 입원(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직접 강제입원치료를 의뢰하고 단지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보호의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절차가 까다로워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3) 정신보건법 제26조(응급입원)

-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발견한 자가, 그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어느 것도 불가능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입원 의뢰하는 것으로,
- 72시간 이내로 강제 입원시킬 수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계속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나. 강제입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강제입원치료는 정신질환의 인권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조건 이므로 가장 엄격한 조건과 절차에 대한 심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함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된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이 제한되어 사실상의 인신구속의 상태로 볼 수 있고, 강제입원 후 인신구금의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법치주의 원칙들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함.
- 강제 입원된 자는 임의로 퇴원할 수 없고, 정신보건법제45조에 따라서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행동의 자유제한(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으며, 동법 제46조는 시설내에서 격리(독방에 유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격리와 강박¹²⁾은 치료목적으로만 시행되어야 하나 처벌이나 질서유지목적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있음.
- 정신질환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없음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환자는 무능력자로 간주하고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사결정 기회를 배제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입원에 동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¹³⁾하므로 보완이 필요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함(법제24조)

- 강제입원이 보호의무자와 정신과전문의 판단만으로 가능하여 너무 쉽게 강제입원 되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퇴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강제입원과정에서 당사자는

12) 강박의 경우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이 격리 및 강박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13) 정신장애인보호와 정신보건의료향상을 위한 UN원칙(1991.12.17)원칙기1등 참조

철저히 배제되고 있으며, 가족들이 강제 입원시키고자 하는 경우 조정 시스템이 없음.

○ 정신보건법제24조는 남용의 사례가 많아 대책 필요.

- 이 조항이 악용되어 입원되는 사례(가정불화, 종교문제, 재산문제, 도박, 가정 폭력, 보험금 등) 다수 발견
- 병원 등에서 정당한 보호의무자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입원시킨 사례도 다수이며 이를 위반, 악용해도 현 정신보건법상 처벌규정이 없음.
- 보호의무자 선임순위가 정하여지지 않아 복수의 보호의무자 간에 환자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다수발생,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보호의무자 선정 필요(UN원칙은 법원과 같은 독립기구의 심사를 거쳐 보호의무자가 선임되는 것임)
- 강제입원 시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절차가 미미한 실정임
- 가족과 의사 둘 중 한쪽이 반대하면 퇴원 불가한 실정이므로 보완시급

(3)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조항 개선 방안

- 보호의무자는 입원신청(청구)권 행사하고, 의사는 의학적인 판단 및 전문가 소견을 제시하고 최종 결정은 법원 혹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등 제3의 기관에서 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외국의 사례>¹⁴⁾

- 가. 스코틀랜드 : 정신보건법원을 신설(2003)/ 요양보호계획, 강제치료명령 결정, 재심사 실시
- 나. 영국 :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독립적 감독기관) 심의를 통해 입원 및 기타 조치 결정/ 강제입원, 퇴원 심사, 결정 등 관리 감독
- 다. 미국 : 주 법원에 입원신청서 접수 후 6일 동안 법원에서 심사.

14) 국가인권위원회.2006. 지방자치단체정신보건업무수행실태조사 29~49쪽 참조

검진한 의사의 증언 후 입원명령 결정(뉴욕, 일리노이, 아이오와주 등)/ 계속입원, 퇴원결정도 법원심사 및 판결로 결정

라. UN 원칙¹⁵⁾ : 성문화 되어있는 사법 및 기타 독립적인 공정한 기관에서 심사/ 주기적 심사, 입원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 기타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

(1) 강제입원을 위한 환자의 주관적 요건 강화

- 강제입원요건으로 UN원칙¹⁶⁾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인 해가 있을 것이라는 심각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정신보건법 규정을 보완하여야 함

※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제2항은 입원동의서에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인지, 환자 자신의 건강 혹은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를 판단한 입원권고서를 첨부

(2) 강제입원관련 UN 원칙 등 국제기준 준수

- 권리의 고지 등 철저
 - 정신질환자는 강제치료와 강제입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하며 그 속에는 자신의 권리와 권리의 행사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환자가 그러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이익과 의지를 가장 잘 알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함. 환자는 환자의 의지를 전달받을 사람 또한 시설에 대한 환자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을 지정할 권리가 있음. (MI 원칙12).

15) UN원칙17 (심사기관) 참조

16) UN원칙16 (비자발적입원) 참조

- 만약 환자가 불평절차나 이의제기를 대신할 변호인을 지정하고 선택할 수 없는 경우 공적 기구에 의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통역 등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자를 가져야 함.
 - 환자의 기록 또는 다른 자료의 사본은 환자나 환자의 변호인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또 열람할 수 있어야 함.(MI 원칙18, 원칙19)
 - 강제입원 및 강제입원의 근거는 즉시 심사기관, 환자 본인과 대리인, 환자가 거부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함. (MI 원칙16).
 - 법원의 결정을 포함하여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토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보호 수준이 향상되어야함(정신보건법상의 의무 철저히행)
- 정신보건법상 신체의 자유(법제2조제5항, 제6항, 제44조), 행복추구권(제2조제1항), 평등권 (제2조제3항, 제41조제1항), 사회권(제2조제2항, 제4항, 제47조), 청구권(제29조) 등이 법6조에 따라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반드시 고지되어야 하며, 타 규정들도 반드시 준수되어야함

(3) 퇴원심사청구(법제29조) 활성화, 입원 및 계속입원사실 서면고지 철저

(4) 보호의무자도 보호의무자 의무 준수 (법제22조)

-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연장을 시켜서는 안 되며,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또한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유기 하여서는 안 됨.

(5) 근본적인 방안(사회복귀시설 및 지역사회보건 서비스 대폭 확충)

- 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및 인력 확충 등 대규모 재정소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임.

- 시설에 입소하면 너무 오랜 기간(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시설에서 생활함. 적절한 재활 및 자립 지원으로 충분히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상당수의 환자들까지 시설에 장기 입원되고 있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사회복지 및 자립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거시설, 재활시설, 작업훈련 시설 등 확충 시급

- 실질적인 정신장애인의 인권이 보호를 위해서는 시설수용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치료방식으로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의 실질적인 대전환이 필요하고, 다시 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함.
 - 지역사회중심, 이용자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제로 개선
 - 격리와 보호위주 정책에서 회복과 재활, 사회복지 위주의 정책전환필요
 -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생활하며, 일하고, 배울 수 있는, 이용자와 가족 중심의 인권친화적인 정신보건 및 치료서비스 방안
 - 위기 대처능력과 회복촉진, 회복력 복원에 중점을 둔 치료로 전환

5. 마치는 말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3팀 (☎ 02-2125-9670~7)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실태조사 결과

총 평

- 대부분의 시설이 진정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장이 진정함 설치에 대한 의무를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형식적인 설치와 운용으로 진정함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었음.
- 수용자 왕래가 잦은 장소에 진정안내문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고, 아울러 전단지를 비치하여 수용자가 충분히 진정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면전진정 절차 안내를 통해 수용자의 진정권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여성병동 병실, 화장실에 CCTV를 과도하게 설치하여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음.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관할지역내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설치 실태현황을 파악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수용자의 진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시설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고취하고자 실시함.

□ 조사기간 : 2007. 10. 23 ~ 11. 16

□ 조사대상 : 대구경북지역 다수인보호시설 총 30개소

— 정신보건시설 14개, 장애인생활시설 7개소, 노인요양시설 5,
아동복지시설 3, 요보호자시설 1

2. 점검항목별 실태현황

(단위 : 건)

구분	진정함 설치	진정안내문 게재	시건장치 설치	진정서 비치	봉투 비치	필기도구 비치
○	21	13	25	4	22	19
×	2	17	5	11	8	9
기타	혼용 4 접근불량 2 혼용및접근불량 1	-	-	일반용지 15	-	간호사실 2

※ ‘혼용’은 시설자체 건의함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접근불량’은 진정함은 설치되었으나 시설 수용자들이 진정함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한다.

‘일반용지’는 인권위 진정서가 아닌 일반용지(A4, 메모지 등)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간호사실’은 필기도구의 잦은 분실로 인해 간호사실에 필기도구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를 뜻한다.

3. 점검결과 문제점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시설장이 진정함 설치에 대한 의무를 전혀 모르고 있음.

2) 진정함에 ‘국가인권위원회’라고 별도 표기가 안 된 경우

○ 시설 자체 건의함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 같이 사용하고 있음.

3) 수용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운 경우

○ 수용자 인원 및 건물 동수에 비해 설치된 진정함은 1개 밖에 없음.

4) 진정함은 있으나 구체적인 안내가 없는 경우

○ 안내문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라고만 되어 있음.

○ 일반 민원사항에 대한 건의문만 있는 경우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아닌 경우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주소나 진정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5) 진정함이 직원 근무대 옆에 있어서 이용이 불편한 경우
- 일부 정신병원의 경우, 진정함이 직원들 근무하는 곳에 있어서 수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함.
- 6) 진정서 용지, 봉합용 봉투, 필기도구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 국가인권위원회용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백지만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조차도 비치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었음.
 - 봉합용 봉투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 수 있어 진정내용이 외부로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봉합용 봉투 대부분이 수신자인 국가인권위원회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 필기도구는 잦은 분실 등으로 간호사실에 비치하는 경우가 있었음.
- 7) 과도하게 CCTV를 설치한 경우
- 여성병동 각 병실, 화장실에 CCTV를 과도하게 설치한 경우가 있어 시정을 요청하였음.

4. 진정함 부적합 설치 사례



▲ 사진 1



▲ 사진 2

- 사진 1, 2 사례는 진정함 크기가 작아 진정서를 넣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정서, 봉투, 필기도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례임. 또한 사진 1은 진정 안내문도 게재되지 않은 경우임.
- 사진 1, 2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 사진 2 사례는 진정함 앞에 세탁기가 놓여 있어 수용자가 휠체어 등을 이용할 경우 접근하기 어려운 사례임.

5. 진정함 설치 모범사례



- 진정함 옆에 노인학대 신고전화,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 등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게재함



- 진정함이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어 진정서가 진정함 안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으며, 시건장치 설치, 진정 안내문 게재, 메모지, 봉투, 필기도구가 잘 비치되어 있는 사례임. 다만 진정서가 아닌 메모지가 비치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임.

6. 시설종사자 의견

- 수용자 입장에서 일방적인 조사로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음.
- 진정사건 조사 시 사건과 관련 없는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자료, 시청각 자료 요청
- 현장 중심 및 권역별 인권교육 요청

7.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

- 1) 수용자 진정 접근권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대부분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설치로 안내 미비로 진정함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함.
 - 진정함 미설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설치 독려.
 - 수용자가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곳에 진정함을 설치하도록 독려.
 -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수용자들에 대한 진정 접근권 및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함.

2) 진정 안내문의 제작, 비치 필요

- 진정 안내문이 A4 크기로 벽면에 부착되어 있어 안내효과가 미흡함으로 수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판, 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게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방법 및 주소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전단지 형식 등의 진정 안내문 비치가 필요함.

3) 지속적 진정함 실태조사 필요

- 시·구·군청에서 정신보건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 점검 시 진정함 설치 점검.

4) 시설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워크숍 강화

- 대규모 일회성 워크숍을 지양하고 소규모 워크숍으로 네트워크 강화.
- 종사자 인권교육 자료 제작 및 권역별로 찾아 가는 인권교육 실시.

5) 향후 지역사무소와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및 기관/시설별 모범 사례 적극 발굴

- 지역 기관/시설별 인권 담당자 선정 필요, 이를 토대로 지역사무소에서 메일링리스트를 구축하고 관련 소식, 법령 안내, 인권교육 실시 및 자료 협조, 관련 정보 상호 공유 등 쌍방향 협력체계 활성화
- 기관/시설별 모범사례 육성 및 발굴 사례 실천대회 개최 예정

정신보건시설 관련규정

정신보건시설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삭제 [2005.7.29]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 공무원 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설수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속 공무원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 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혹은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등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등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과 위원 등과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소속 공무원 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7.29]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시행일 2001.11.25]]

정신보건시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2조 (다수인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1.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3.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 부랑인의 보호 및 재활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
 -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6.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
7. 갱생보호시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3조 (구금·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나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밖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 ④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 또는 녹화한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내용을 방문조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의 승낙없이 면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①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은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수용자가 신체·건강상의 위해 그밖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 ①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진정함의 설치·운용) ①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합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명의로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1. 목 적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제1항은 구금·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진정함 표시 및 안내문 게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진정함의 규격 및 재질

- 진정함의 규격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진정함의 재질은 내용물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진정함 설치 장소 및 표시

- 진정함은 시설수용자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접근이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진정함 표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여 다른 용도의 민원함(또는 건의함)과 구별해 운용하여야 한다.
- 외국인을 수용 및 보호하는 시설에서는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4. 진정 안내문

- 설치된 진정함의 상단 또는 좌우에는 진정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설수용자가 진정함 설치 취지와 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진정 안내문의 내용은 붙임 2를 참조하되, 시설수용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씨 크기로 작성해 부착하여야 한다.

5. 시건장치 및 관리

- 진정함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그 관리 책임자를 두어, 매일 일정시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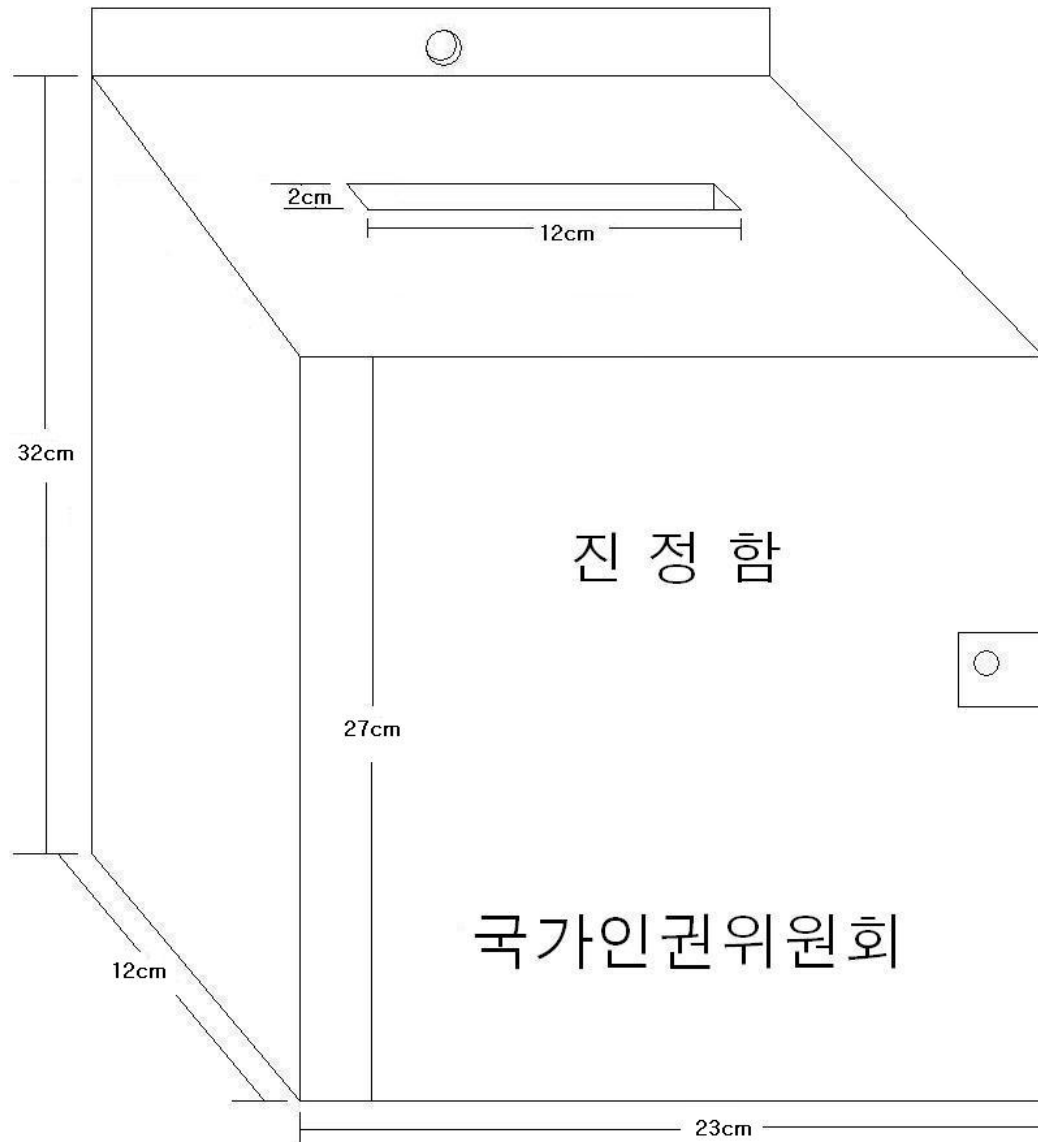
6. 진정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

- 진정함이 설치된 곳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서나 일반용지 및 필기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 진정서를 봉합하는 봉투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및차별행위조사구제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양식의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7. 진정함 설치 통보

-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해 진정함 설치 장소를 통보할 때에는 진정함, 안내문, 진정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가 나타난 사진을 동봉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1 : 진정함 규격)



(붙임 2 : 진정 안내문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 및 치료감호소 등의 구금시설과 장애인, 노인, 아동, 외국인 등이 수용되어 있는 보호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진정을 받습니다.
2.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하고자 할 경우, 시설에서는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진정서 작성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술, 증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유가 제한된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관을 직접 보내거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우편 : 인권침해에 대해 자유롭게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7층 인권상담 센터
 - 전화 :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31
 - 팩스 : 02) 2125-9811
 - 인터넷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견본 사진



[진정서 앞면]

[별지 제3호 서식]

국가인권위원회 규칙 제7호

접수번호	날짜 200 년 월 일 시 분		
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국적	
④ 주소			
⑤ 전화	⑥ 팩스	⑦ 이메일	
⑧ 진정인과의 관계		⑨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진정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③ 모르고 있다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②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헌법재판소 등 권리구제기관의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③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누구 ()			
5.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뒤면]

6. 첨부서류: ☐ 있음 ☐ 없음	
7.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 상담 후 종결로 처리하기 원합니다. ☐ 진정 접수를 원합니다.

진정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수사기관 등에 진정·고소하면 조사 종결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였음 ☐

긴급구제조치 ☐필요 ☐불필요

200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 발 신 처 :

■ 수 신 처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면전진정 신청서

시 설 명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용실 (호수)	비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의거 면전진정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확인자 (서명)

정신보건법 주요 조항

제6조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입원 및 거주중인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제21조 (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2조(보호의무자의 의무) ① 보호의무자는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의 입원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⑤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입원 또는 입원기간을 연장시킨 사유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의무자는 즉시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제39조 (검사·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거나 보건소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며, 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장부·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시설에 출입하여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여부,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

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심사를 하는 관계공무원 및 위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이에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그 관할구역외의 정신질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통보를 받은 보건소장은 정신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입원금지등) ①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유효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환자의 격리제한) ① 환자의 격리는 환자의 증상으로 보아서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격리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당해 시설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격리하는 경우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격리 및 강박 지침

1. 정의

- 1) **격리**는 입원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환자가 응급상황(자·타해 또는 심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또는 임상적인 상태의 조절을 위하여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시간 동안 행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 2) **강박**은 환자의 신체운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손목이나 발목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 등)로 고정시키거나, 벨트를 사용하거나, 보호복을 착용시키거나, 의자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함

2. 적용기준

- 1) 자해 혹은 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 2) 치료 프로그램이나 병실환경을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환자의 동의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할 수 있음
- 4) 환자가 받는 과도한 자극을 줄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 **격리**
- 5)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 또는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3. 적용시의 원칙

- 1) 주치의 또는 당직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해제하여야 한다.
- 2) 격리 또는 강박 시행전과 시행 후에 그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자나 그 가족에게 설명한다.
- 3) 환자는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
- 4) 치료진이나 병동편의 및 처벌을 목적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 5) 치료자가 단독으로 격리나 강박을 시행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해 적절한 수의 치료진 2-3명이 있어야 한다.
- 6) 격리 또는 강박후 간호사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간호일지에 강박

또는 격리를 시행한 이유, 당시의 환자상태, 방법(보호복, 억제대 2Point, 4Point, 보호조끼)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다.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주치의 또는 당직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 7) 강박조치한 환자에게는 1시간마다 Vital sign(호흡, 혈압, 맥박 등)을 점검하고, 최소 2시간마다 팔다리를 움직여 주어야 한다.
- 8)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땀흘림)을 확인하여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하고, 적절하게 음료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8) 환자상태가 안정되어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간호사는 즉시 주치의(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강박 또는 격리를 해제하고 신체의 불편유무를 확인한다.
- 9) 양 팔목과 발목에 강박대를 착용시킬 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손가락 하나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며, 가슴벨트는 등뒤에서부터 양 겨드랑이 사이로 빼서 고정시키고 불편하지 않는가 확인하고 관찰한다.

◇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

구 분	적 요
· 보호일시 (강박/격리)	
· 병 명	
· 지시자 성명 및 서명	
· 의사 성명 및 서명	
· 참여자 성명 및 서명	
· 격리(강박) 당시 증상	
· 격리(강박) 방법	
· 시행 시작/종료시간	
· 격리(강박)시행 세부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정신보건시설관련 최근 보도자료**

"강제입원, 퇴원 불허, 격리·강박, 폭행 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여전히 심각"

- 국가인권위 올 상반기 권고 사례 통해 본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설립 이후 정신보건시설과 지도감독기관에게 재발 방지 등의 권고를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여전히 이미 권고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올 들어 권고 결정을 한 10여 건의 진정사건에 나타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 현실은 아직 상당수의 정신보건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진료기록부 허위기재...검찰 고발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은 상당수 입원환자들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켜 왔음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해당 병원의 전, 현직 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요지> 진정인은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적이 있는데,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에게 부당한 입원, 격리·강박, 전화제한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입원환자들이 구금시설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인권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진정일자 2006.10. 결정일자 2007.7.)

- 그동안 위 병원은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이들을**(올케, 외삼촌, 시설장 및 시설직원,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 등) 보호의무자로 하여 환자들을 입원시켰고, 입원동의서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된 환자들에게 입원사유,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준 사실도 없었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은 매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입원 환자에게 대해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켰고**, 계속입원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제12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퇴원한 적이 없는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등(의사지시서 · Progress Note · 간호기록지 등)에 퇴원과 입원을 반복한 것처럼 기록한 것은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공중전화를 설치하지 않아 간호사실에 있는 전화를 사용토록 하면서 통화횟수는 2주에 1회로 제한했고, 통화시간도 3분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작성한 편지는 간호사실에서 열람한 후 발송여부를 결정했고 진정권 보장과 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고 건의함과 진정함을 병행하여 사용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격리 및 강박의 경우도 병동규칙으로 사유 및 시간 등을 정해 놓고 임의대로 시행한 사례도 있었으며, 환자들이 병원의 화장실, 복도, 홀 등을 청소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킨 위 병원의 전, 현직 병원장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의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울러 감독기관의 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병원장에게도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였습니다.

2. 부당한 격리·강박, 통신의 자유 제한

진정요지> 서울 소재 모정신병원은 환자들을 그룹체계로 나누어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환자가 입원하면 양손과 양발, 가슴을 묶는 등 부당하게 강박을 한다(병합사건 진정일자 2005.10. 2005.11. 2006.6 결정일자 2007.2.)

진정요지> 대전 소재 모정신병원은 행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진정을 방해했으며, 부당한 격리와 강박은 물론 강제입원 및 강제퇴원이 만연하고 있다. 이에 진정을 원한다(병합사건 진정일자 2005.10. 2006.7. 2006.8. 결정일자 2007.3.)

진정요지>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전화사용 횟수를 제한함은 물론 전화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공중전화의 긴급통화 기능을 정지시켜놓고, 외부인의 환자 면회 시 보호사를 입회시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진정일자 2005.12. 결정일자 2007.4.)

- 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은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 · 강박 관련,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되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사항을 진료기록부, 격리 및 강박 시행일지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면서 특히 강박 시에는 시행 당시 환자상태, 사유,

방법, 지시자 및 수행자, 시행 시간, 시행 중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통신의 자유 제한 등 입원 환자에 대한 행동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되 그 이유,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 등에 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지역 소재 병원에서는 통상 개별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격리·강박에 관한 지시 없이 입원 초기 내려진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 또는 병원규칙에 따라 사실상 간호사, 보호사가 격리·강박을 시행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또한,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상태에 대한 판단 없이 입원 환자들을 권익체계에 따라 그룹화하여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병원규칙으로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행동 제한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입원 환자의 전화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입원 환자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 및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찰감독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과도한 CCTV 설치

진정요지>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샤워시설로 함께 사용되는 병원 화장실에 문과 칸막이가 없어 용변을 보는 모습과 목욕장면이 바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를 CCTV를 통해 관찰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진정을 원한다(진정일자 2005.12. 결정일자 2007.4.)

- 위 병원의 경우, 화장실과 샤워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폐막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그 안에 CCTV까지 설치하여 **환자들의 신체부위가 다른 환자나 병원 종사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국가인권위 실지조사 이후 화장실 및 샤워실에 차폐막을 설치하고 CCTV를 철거하였지만, 화장실 차폐막 설치하는 환자들의 상체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미흡했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의 이러한 행위는 입원 환자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수치심과 굴욕감을 유발하고 환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화장실의 차폐시설을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05. 3. 14. 국가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환자 폭행

진정요지>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정신질환이 심한 환자에게 욕설과 구타를 한다(진정일자 2005.12. 결정일자 2007.4.)

진정요지>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은 뇌가 손상되어 의사표현을 못하는 환자에게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넣어 괴롭혔다. 또 약을 똑바로 먹지 않는다고 보호사가 환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팡 소리가 나게 부딪혔다.

-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과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 종사하는 일부 보호사들이 방어능력이 없는 환자들을 폭행했다는 진정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들이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 머리를 때리거나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의 경우 징계 절차 중에 피진정인이 사직했고,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서는 피진정인들에 대해서 시말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을 참작하여 피진정병원장에게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여 시행토록 권고했습니다.

5. 진단서 무단발급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서울 소재 모정신병원은 정신질환치료 경력이 기록된 진정인의 진단서를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무단으로 발급해주었다(진정일자 2006.7. 결정일자 2007.2.)

-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1조 제1항(기록열람 등)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정신병원의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진단서를 발급함에 있어 진정인의 법령상 정당한 보호의 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직원에게 발급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7조와 의료법 제20조 제1항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위 정신병원에 대하여 진정인의 진단서를 권한 없는 자에게 발급해 준 정신과 전문의를 주의조치 할 것과 위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권고하였습니다.

6. 부당 입원 및 서면고지 의무 위반

진정요지1> 진정인은 포항 소재 모정신병원에 강제 입원(2005.11.)되었는데, 피진정인인 병원장은 입원사실을 환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진정일자 2006.6. 결정일자 2007.4.)

진정요지2> 진정인은 형제들에 의해 인천 소재 모정신병원에 강제입원(2005.5.)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퇴원이 가능하다는 퇴원을 불허하고 있다. 퇴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진정일자 2006.8. 결정일자 2007.5.)

-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5조는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규정하면서 정신의료기관장으로 하여금 입원 당사자에게 입원 사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소재 모정신병원, 충남 소재 모정신병원, 인천 소재 모정신병원, 경남 소재 모정신병원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치를 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인 퇴원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정인들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청구를 **밟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비자발적 입원환자에게 입원 사유, 퇴원심사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한 것은 본인의 의사가 배제된 채 보호자 동의 및 전문의 진단에 의해 입원된 사실을 본인에게 고지하고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부당한 강제입원으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 포항 소재 모병원장을 비롯한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비자발적 입원환자들이 자신의 입원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그 사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원심사청구를 통해 부당한 입원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며,

- 입원 환자가 퇴원심사청구를 밟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의무, 즉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보건법상의 권리와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입원 환자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입원 환자들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피진정병원장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7. 병원 치료환경 훼손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충북 소재 모병원은 병원 안에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관광객을 안내하면서 조용한 환경에서 치료 받아야 할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조성하고 있다(진정일자 2006.8. 결정일자 2007.2.)

- 헌법 제17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환경조성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정신병원장은 병원 구내와 이에 인접한 곳에 대형 조각상 수십 점을 설치하여, 이를 관광객에게 관람시키면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냄으로써 환자들의 치료환경을 저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정신병원에 대하여 병원 구내에 조각상 관람객을 입장시키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8. 부당한 종교의 자유 제한

진정요지> 충북 소재 모정신병원은 타 종교에 동의 없이 환자들을 강제로 교회 예배에 참석시키고 있다(진정일자 2006.8. 결정일자 2007.2.)

-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서는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에게 종교 및 종교행사에 참여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병동 찬양행사와 찬양대회를 강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에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병동내의 강제적인 찬양행사와 찬양대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9. 지도 감독 관련(공통)

- 위와 같이 피진정병원들에서는 정신보건법령 등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들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위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 해당 관할 감독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 등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 감금 · 부당처우 등 정신병원 인권침해 검찰 고발"

- 국가인권위, 부산 · 파주 2개 병원 정신보건법 형법 위반 밝혀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행려 환자 등을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장기간 불법으로 감금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입원을 연장하고, 보건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입원 환자를 빼돌리거나 병원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소모품비를 받거나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리는 등 불법적이며 인권침해적인 행태를 저질러 온 부산 사상구 A병원과 경기 파주시 B병원을 정신보건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또 두 병원의 정신보건법령 위반 행위 등에 대해 법률구조 요청 및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광역단체장 등에게 권고키로 했습니다.

1. 진정요지 관련

접 수	진정인	피진정인	진정요지
2006. 8. 2006. 12.	이모씨 (남, 52세) 김모씨 (남, 46세)	부산 사상구 소재 A병원장	퇴원 · 처우개선심사청구서 미지급 등 환자 권리 행사 방해, 부당한 전화 제한, 과도한 환자 수용, 행려환자 등에 대한 부당한 강제 입원,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등
2006. 11.	박모씨 (남, 40세)	경기 파주시 소재 B병원장	환자사망 방치 및 은폐, 부당한 입원 및 퇴원, 부당한 처우(과도한 CCTV 설치, 전화제한, 작업치료, 소모품비 및 식대, 환자에 의한 감시 등) 등

2.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1) 검찰총장에게 고발

피진정인	고발내용
A병원장	- 공모씨 등 16인의 행려환자의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지연시킨 사실에 대해서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및 제57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 - 사상구보건소 지도·점검 시 입원환자 수를 속이기 위해 약 40~50인의 환자를 별관으로 빼돌린 사실에 대해서 「형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고발
B병원장	- 강모씨 외 97명의 환자들에 대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시킨 사실에 대해서 고발 -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모든 환자들에 대해 2주에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한 사실에 대해서 「정신보건법」 제45조제1항 및 제56조제4호 적용하여 고발 - 김모씨 외 11명의 행려환자들을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불법적으로 감금한 사실에 대해서 「형법」 제276조제1항 적용하여 고발 - 피진정병원에 입원된 모든 환자 및 가족들을 기망, 이불 및 환의 세탁비 등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을 적용하여 고발

2) 법률구조 요청

피진정인	법률구조 요청내용
B병원장	○김모씨 외 11명의 환자들이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감금상태로 불법입원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법률구조 요청

3) 권고사항

가. 보건복지부장관

피진정인	권고내용
A병원장	- 사상구보건소의 지도·점검 시 입원환자 수를 속이기 위해 약 40~50인의 환자를 별관으로 빼돌려 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 「의료법」 제64조를 적용, 의료기관 폐쇄 등의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B병원장	- 김모씨의 진료기록부 등에 입·퇴원 관련사실을 허위 기재한 사실에 대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의료비 부당 청구 및 부당 징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특별감사 등을 통해 환수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부산광역시 및 경기도지사

피진정인	권고내용
A병원장	-. 피진정병원의 정원초과입원 등의 정신보건법령위반 사실과 관련해서 피진정병원에 대해서 특별 감사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행려환자 응급입원 등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행려환자 관리시스템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정신과환자 입원 시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내과 또는 정형외과전문의가 진단하고 입원동의를 요청한 것에 대한 조치 없이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에 동의함으로써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동구청장, 사상구청장, 연제구청장, 중구청장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과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B병원장	-.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보호의무자로서 입원에 동의하여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파주시장과 시흥시장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과 관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다. 사상구청장 및 파주시장

피진정인	권고내용
A·B 병원장	-.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상구보건소 및 파주시보건소가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병원의 「정신보건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사유를 밝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라. 피진정인

피진정인	권고내용
A·B 병원장	-. 피진정병원의 인권침해 사항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시정과 체계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 행려환자 등에 대한 부당한 강제입원 및 입원연장

○ A·B병원은 상당수 강제 입원된 환자들에 대해 계속입원심사를 누락시켰습니다. B병원의 경우 2003.부터 2007. 5.까지 계속입원심사청구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강모씨 외 97명에 대해 총 173회를 누락시켰고, A병원의 경우 행려환자 공모씨 외 15명에 대해서 총 35회를 누락·지연시켰습니다.

○ A·B병원은 신원 불상의 행려자를 응급입원 시키면서 경찰관 또는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수의 행려자를 입원시켰고, 보호의무자로서 시·군·구청장에 대한 동의 요청도 72시간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시행했습니다. 특히 B병원의 경우는 김모씨 외 11명에 대해서 수 십일에서 수백일 동안 보호의무자인 시·군·구청장의 동의 없이 장기간 감금상태로 불법입원 시켰습니다.

○ 정신과전문의가 아닌 내과 또는 정형외과전문의가 진단한 입원동의서에 아무런 조치 없이 보호의무자로서 동의했거나, 수 십일에서 수백일이 경과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보호의무자로서 동의한 여러 시·군·구청장(동구청, 사상구청, 연제구청, 중구청, 시흥시, 파주시)을 확인했습니다.

○ B병원의 경우 정당한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없는 이들(시설장, 시설간호사, 친구, 매형 등)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강제입원 시킨 사실과 김모씨의 경우는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이후 한번도 퇴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퇴원을 반복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는 허위 기재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런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제12조)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계속입원심사 누락 및 지연,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장기간 감금상태로 불법 입원시킨 것에 대해서는 각 「정신보건법」 및 「형법」을 적용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김모씨 외 11명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고,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부산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 사상구청장 및 파주시장과 피진정인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과도한 환자수용

○ 의료인력 기준과 관련하여 사상구보건소는 그동안 A병원에 대해서 수차례 행정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지만, 2007. 3. 7. 현재 257명의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어 허가 병상 수 및 정신과전문의 대비 모두 정원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및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않고 여전히 「정신보건법」 제12조 등을 위반하고 있는 피진정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특별 감사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 그리고 피진정병원에서는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환자를 빼돌린 적이 없고 2006. 6.경에는 지

도·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모씨 등 5인의 환자들이 2006. 6.경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과다한 환자 입원을 속이기 위해 피진정병원이 대략 40~50명 정도의 환자들을 별관에 숨기고 잠금장치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사상구보건소가 2006. 6. 21. 피진정병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06. 6. 21. 사상구보건소 지도·점검 시 피진정병원은 입원환자 인원을 속여 행정처분 등을 면하기 위해 수십 명의 환자들을 별관으로 빼돌린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사상구보건소의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형법」 제13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한 것이고, 아울러 사상구보건소의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 부당한 소모품비 징수 등

○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의하면 병원 입원료에 위생 간호(담요교환, 환의교환, 소독포 교환)와 병실비품(수건, 환의, 시트, 담요, 흡이불 등)이 포함되는데, 그동안 B병원은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소모품비로 5만을 받았습니다. 2007. 5.부터 7.까지 소모품비 사용내역을 보면 이불 및 환의 세탁료로 총 1천3백 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진정병원이 개설된 2003. 1.부터 그 금액을 추산하면 수 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모씨는 입원기간 동안 산책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총 32회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박모씨 외 3명에 대해서 퇴원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한달 단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의료비의 부당 청구 및 징수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별감사를 통해 부당 청구된 의료비 환수와 환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의료비의 환불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이고, 특히 환자 및 환자의 가족을 기망하여 세탁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의무 없는 경제적 부담과 그로 인한 고통을 준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형법」 제347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 부당한 전화통화 제한

○ A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주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진정함 실태조사 이후 전화통화를 더 이상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 B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을 권익체계에 따라 그룹화시켜 전화사용(2주에 1회)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공중전화도 간호사실내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실지조사 후에 공중전화는 간호사실 밖으로 설치했다는 사진을 제출했으나, 2007. 9. 21. 추가 실지조사 시 여전히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2주에 1회로 전화통화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 부당한 작업치료

-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작업치료의 절차와 기준, 내용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은 작업치료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 강제노동 또는 과도한 노동착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A병원에서는 배식, 거동 불편한 환자 도우미, 청소, 봉투작업 등 환자들에 대해서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별 통장이 아닌 장부상으로 임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작업치료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 B병원에서는 간병, 주방(보조), 원예, 세차, 세탁 등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B병원도 작업비에 대해서는 통장이 아닌 장부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간병, 주방, 원예, 세차 등 일부 환자들은 하루 8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병원의 정규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 영역을 작업치료로 대신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고, 피진정병원의 운영편의(인건비 절감 등)를 위하여 저임금을 대가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작업치료 명목의 강제노역이나 노동력 착취사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작업치료의 범위와 시행방법, 평가방법, 특히 작업의 종류와 일일 최대 허용시간, 임금지급기준 등에 대한 근거 및 기준,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법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피진정 병원들의 즉각적인 시정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환자 권리 미고지, 부당한 격리·강박

- 그동안 A·B병원에서는 강제입원환자에 대해서 입원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계속 입원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를 포함하여 환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 B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에게 국가인권위의 진정절차 등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장모씨에게서 국가인권위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임의대로 빼앗고, 국가인권위에 전화를 못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A·B병원에서는 병동규칙, 권익체제로 격리·강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격리·강박 일지의 내용과 의사지시서 및 간호기록지의 내용이 상이하며 의사의 지시가 누락된 사례 등을 보면 임의대로 격리·강박을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감독기관 및 피진정인들에게 행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권고한 것입니다.

■ 과도한 CCTV 설치, 환자 감시 등

○ B병원의 CCTV는 2병동 16대, 3병동 16대, 5병동 9대, 6병동 9대 등 총 50대를 화장실, 병실, 복도, 격리실 등에 설치되어 있었고, 용변 및 샤워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 실지조사 이후 화장실(샤워실)의 CCTV 철거 및 격리실 화장실에 차폐막을 설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생활의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B병원에서는 방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용어는 바뀌었다고 해도 피진정병원에서는 여전히 방장 제도(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며 환자들을 직·간접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매년 실장(방장) 제도를 즉시 폐지토록 안내하고 있듯이 즉각적인 폐지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도·감독 관련

○ 그동안 A·B병원의 감독기관인 사상구보건소 및 과주시보건소는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외에 피진정병원들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정신보건법」 등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전혀 적발하지 못했기에 그 사유를 밝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감독기관에 권고한 것입니다.

"정신병원, 치료와 인권은 뒷전"

- 원장·관련 직원 검찰 고발, 보건복지부장관에 특별감사 권고 -

"국정신병원(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이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하였으며, 병원 간에 환자를 강제로 전원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은 부실 감사로 이를 묵인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전직 병원 직원 박모씨(남·36세)가 동 병원의 원장, 직원, 관계행정기관을 상대로 200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에 진정하는데 대해 국가인권위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 주 요 권 고 >

1. 검찰총장에게 고발

■ 학대행위 관련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남, 51세)가 중증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이모군(남, 19세), 조모군(남, 20세), 미성년자인 박모군(남·15세)을 입원 시부터 같은 병실에 수용 시켜놓고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매트리스가 다 뜯겨나간 철제침대에 도복 끈을 이용해 목욕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동안 팔 또는 다리를 강박하여 놓고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273조(학대)와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 제3호 위반으로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남, 51세)를 고발하고, 피해자 김모씨(남·38세)를 학대한 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73조(학대)를 위반으로 피진정인 신경정신과전문의 이모씨를 고발했습니다.

■ 불법 강제입원 관련

피해자 송모씨(여, 57세) 등 다수의 환자를 입원동의서 위조 및 입원에 필요한 관련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부정발급 받은 방법으로 불법 강제입원 시킨 것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 제276조(감금), 「주민등록법」 제29조의 위반으로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원무팀장 전모씨, 전 원무팀장 윤모씨를 고발했습니다.

■ 불법 강제전원 관련

피진정병원의 원장 주모씨와 흥정신병원의 원장이 전화로 흥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이모씨(남, 52세)를 포함하여 약 30여명 정도의 환자를 흥정신병원으로부터 피진정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적법한 입원절차를 밟지 않고 이들 환자를 강제로 버스와 봉고차에 태워 흥정신병원으로 전원 시켜 불법입원 시킨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전 원무팀장 윤모씨를 「형법」 제276조(감금)의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 계속입원치료심사 관련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가 피해자 송모씨(여, 57세) 등 강제입원 된 환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상 6개월마다 광주광역시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계속입원 내지 퇴원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모씨 및 신모씨 등 다수의 환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불법강제입원을 계속하게 한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을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행정조치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병원장의 「정신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전국 정신의료기관에서 아동을 성인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는 실태를 조사하여 아동과 성인을 동실에서 수용하는 것이 정신질환아동의 치료·보호에 적절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수립을 권고하였습니다.

3. 해당 시, 구 및 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과 보건소장 경고조치 권고

해당 구청은 피해자 신모씨 외 6명이 흥정신병원에 불법 입원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입원서류에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처음부터 적법한 입원한 것처럼 입원동의서를 허위작성해 준 것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정신보건법」 제22조(보호의무자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구청장에게 관련 직원에 대해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흥정신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환자들에 대한 학대행위 및 광범위한 불법 강제입원이 자행되도록 방치한 피진정인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39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의거, 해당 구청장에게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조 사 결 과 >

국가인권위의 해당 시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대행위 관련

피진정병원에서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의 중증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이모군(남, 19세), 조모군(남, 20세), 아동인 박모군(남·15세), 김모씨(남·38세)를 입원 시부터 매트리스와 장판과 벽지가 다 뜯겨나간 대소변 냄새가 나는 병실에 수용해놓았습니다. 피진정병원은 피해자들에게 △목욕시간을 제외한 하루 대부분의 시간동안 기저귀만 채운 상태에서 1미터 정도 길이의 철제침대에 팔 또는 다리를 강박해놓고 병원의 다른 직원이나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방치하여 학대해 왔습니다. △특히 15세 미성년자인 박모군을 위 환자와 같은 병실에 강박하여 놓고, 11세 미성년자인 최모군을 성인 정신질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수용하여 생활하게 하였습니다<관련사진과 환자 관련 사항>.

<강박당한 피해 사진>



<명단>

이름	나이	입원기간	학대행위
이모군	19세	2007. 1. 25. ~ 2007. 5. 4.	강박 끈으로 철제침대에 계속해서 묶음
박모군	15세 (아동복지법 적용)	2007. 1. 25. ~	"
조모씨	20세	2006. 10. 1. ~ 2007. 5. 4.	"
김모씨	24세	2006. 9. 8. ~ 입원 중	"
최모군	11세	2006. 2. 24. ~ 5. 7.	"

■ 불법 강제입원 관련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원무팀장 전모씨, 전 원무팀장 윤모씨는 미인가 복지시설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피진정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의 입원동의권자인 환자의 부모도 모르게 위 시설 측으로부터 피해자 이모군, 박모군 등의 신병을 인도받아 이들의 입원동의서에 환자의 부모가 서명한 것처럼 위조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서 입원에 필요한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15건을 부정발급 받아 온갖 불법적인 행위로 입원시키고, △피해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전남편과 미성년인 자녀를 시켜 정신보건법상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미성년 자녀가 입원동의 하도록 해 강제입원 시키고, △피해자 신모씨, 이모씨 등 7~8명의 환자에 대하여는 정신보건법상 적법한 보호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입원시키고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간 불법 감금하였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 위반행위, 시문서위조행사, 강제입원(불법감금)>

성명	입원형태	입원서류
이모씨(남, 19세) 박모씨(남, 15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입원동의서
이모씨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입원동의서(동의 지연)
송모씨(여, 54세)	보호의무자와 자리에 의한 입원(중복)	입원동의서, 자의입원신청서 (미성년자 보호의무자로 기재, 위조)
조모씨(여, 30세)	자리에 의한 입원	자의입원신청서(환자에게 작성케 함)
신모씨, 이모씨	"	자의입원신청서 (환자에게 작성케 함, 약 2년 후에 시군구청장의 동의를 입원일에 소급)
김모씨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미구비: 2개월 후 시군구청장의 동의
박모씨	"	미구비: 8개월 후 시군구청장의 동의
김모씨	"	미구비: 20일 후 시군구청장의 동의
박모씨	"	미구비: 5개월 후 시군구청장의 동의

■ 불법 강제전원 관련

피진정병원의 원장 주모씨와 흥정신병원의 원장이 전화로 흥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이모씨(남, 52세)를 포함하여 약 30여명 정도의 환자를 흥정신병원으로부터 피진정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환자개인이거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적법한 입원절차를 밟지 않고, 환자들을 강제로 버스와 봉고차에 태워 흥정신병원으로 전원, 불법 입원

시킨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전 원무팀장 윤모씨를 「형법」 제276조(감금)의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계속입원치료심사 관련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는 강제입원 된 환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6개월마다 광역시장에게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여 심사 결정에 따라 계속입원 내지 퇴원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모씨, 신모씨 등 다수의 환자에 대해 광주광역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강제입원 시켜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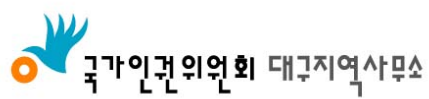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 위반>

성명	입원일	심사청구 시한	비고
송모씨	2006. 11. 29.	2007. 5.	1회 누락
신모씨	2004. 7. 1.	2004. 12. 2005. 6. 2005. 12. 2006. 6.	4회 누락
이모씨	2004. 7. 1.	"	"
박모씨	불상(계속입원심사청구서에는 2007. 6. 6.로 기재)	2007. 4. 12.	계속입원심사청구서 중 보호의무자 동의란 위조

■ 결론

피진정인 원장 주모씨 등은 대규모의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보건법이 규정한 환자들의 치료와 인권 보호보다는 영리목적에 치중하였습니다. 중증 정신지체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원동의서를 위조하여 일단 입원부터 시켜 놓았고, 특별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성인들과 같은 병실에 강박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묵인해왔습니다.

초정신병원에서 광범위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인 구청 및 지도감독기관인 관할보건소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인권유린에 대하여 책임과 관리에 소홀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보건소장과 담당공무원에게 경고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초정신병원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특별감사 및 아동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를 강구토록 권고한 것입니다. 마침.



우 700-732 대구시 중구 동인2가 50-3, 호수빌딩 16층

전화 : 053-212-7000 팩스 : 053-212-7007

인권침해차별성희롱 상담은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

www.humanrights.go.kr _____